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3195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31952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6543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이정길, 허민영

변론종결 2023. 11. 9.

판결선고 2023. 12. 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654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성주군 D 답 1,623㎡에 관하여 2020.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C에게 위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0. 11. 23. 접수 제15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0. 8. 6. F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F의 배우자인 C과 원고가 F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이후 F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는 F, C 및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2311(제1심), 대구고등법원 2020나26097(항소심)]를 제기하여, 2020. 10. 22. 제1심법원으로부터 ‘F, C 및 원고는 연대하여 E에게 184,295,161원 및 그중 154,2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9. 1.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F, C 및 원고는 연대하여 E에게 1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1.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F는 E에게 2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1.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가 위 판결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2021. 10. 7. E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금 합계 176,510,547원을 지급한 후 F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차전7371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F는 176,510,547원, C은 F와 각자 위 돈 중 72,921,3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10. 30.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E가 제기한 위 대여금 청구의 소의 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 2020. 11. 23. 자신의 삼촌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 명의인 경북 성주군 D 답 1,6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0. 11. 23. 접수 제15839호로 2020. 11. 19. 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가 E의 소제기와 강제집행에 대응하여 E에게 연대채무를 변제함으로써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자,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회피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09. 1. 29.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피고의 형인 H에게 명의신탁 해둔 것인데, H이 사망하여 그 아들인 C이 이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자동차 3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거나 심화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무자력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달서구청 세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11.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3대의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2010. 7. 1. 제작되었고 2018년경 주행거리가 167,118km이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2010. 12. 3. 제작되었고 2020년경 주행거리가 192,185km이며,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은 2012. 4. 22. 제작되었고 2018년경 주행거리가 241,903km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차량은 그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2020. 11. 19.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외에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소유였다가 2009. 1.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2. 3. H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9. 5. 25.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2. 2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유로 추정되어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29.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H이 아니고 피고인데, 피고와 H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사망하여 그 아들인 C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은 등기부상 기재대로 2009. 1. 29. 매매를 원인으로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로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J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1호증(G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은 그 기재 일자인 2009. 1. 29.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와 G이 사후에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¹⁾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증(G 작성의 사실확인서)은 G이 피고와 을 제1호증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역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을 제2호증의 기재(피고가

G에게 2009. 1. 29. 78,000,000원을 송금함)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1. 29. G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피고라는 점, 피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원고가 2021. 10. 7.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자신의 보증채무를 포함한 176,510,547원을 E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C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11. 19. 이후에 성립한 것이기는 하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0. 8. 6. 체결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연체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윤경, 판사 최서은, 판사 김정일

1) 피고와 피고 대리인도 2023. 5. 4. 자 및 2023. 5. 12. 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였다.